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가합52598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6. G 주식회사

7. H

변론 종결2014. 11. 5.

판결 선고2014. 1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516,112,917원 및 위 금원 중 515,550,602원에 대한 2014.

2. 25.부터 2014. 9.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D, E, 주식회사 F은 피고 주식회사 A,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22,588,403원 및 위 금원 중 222,027,523원에 대한 2014. 2. 25.부터 2014. 9.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과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21,850,000원 및 위

금원 중 55,909,118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부터, 33,940,5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2.부터, 132,000,382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각 2014.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H 사이에 2014.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H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4. 1. 2. 접수 제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C, H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2. 피고 H에 대한 청구

가. 전제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C는 신용보증약정에 전체에 관하여, 피고 D, E,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제3신용보증에 관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보증기한 및 보증원금)의 최종 변경(1년의 보증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내역은 아래 도표 '변경보증기한(감축보증원금)'란 기재와 같다.

1	2007. 6. 5. (I)	중소기업은행/ 피고 주식회사 A	2008. 6. 5.	240,000,000원 (300,000,000원)	2014. 5. 30. (112,000,000원)	피고 C
2	2009. 12. 1. (J)	2010. 12. 1.	289,000,000원 (340,000,000원)	2014. 11. 28. (183,600,000원)	피고 C	
3	2009. 12. 1. (K)	2010. 12. 1.	340,000,000원 (400,000,000원)	2014. 11. 28. (221,850,000원)	피고 C, D, E, F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이 2014. 1. 8. 신용보증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에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2. 25.

중소기업은행에 519,917,792원(= 제1보증 관련 112,858,662원 + 제2보증 관련 185,031,607원 + 제3보증 관련 222,027,523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제1보증 관련 대위변제금 중 4,367,190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대위변제일 이후 연 12%)으로 1,435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560,880원이다.

3) 등기관계 피고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4. 1. 2. 접수 제31호로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쟁점

- 1) 피고 C가 무자력이었는지(쟁점 1)
- 2) 피고 C의 건물 매도가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 해당성이 없는지(쟁점 2)
- 3) 피고 H의 선의의 수익자인지(쟁점 3)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와 피고 H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1. 2.은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A이 신용보증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4. 1. 8.에서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이전의 시점으로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의한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쟁점 1(피고 C가 무자력이었는지) 가) 피고 H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 H에게 이전할 당시 무자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매매 당시 피고 C가 보유한 적극재산(이 사건 건물 포함)의 가액은 1,362,399,100원[= 이 사건 건물 128,000,000원 + 제천시 L 대 1,890m²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주택 10-5m², 2층 주택 79,05m²) 497,918,400원 + 제천시 M 전 6,209m², N 전 2,115m², O 전 2,280m², P 전 731m² 합계 696,480,700원 + 제천시 Q 전 2,423m² 중 2,423분의 1322.32 지분 40,000,000원]이었던 반면 피고 C가 담보대출 및 보증으로

원고 등에 부담하는 채무, 즉 소극재산은 3,306,439,000원으로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쟁점 2(피고 C의 건물 매도가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 해당성이 없는지) 가) 피고 H의 주장

피고 H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와 사이에 2013. 11. 5. 피고 H의 기계를 1억 원에 팔고, 피고 G의 기계를 2,000만 원에 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차액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G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 C가 위 채무를 인수하고 그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한 가격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적극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C가 원고 등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원래 피고 C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었던 피고 G의 피고 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고 그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쟁점 3(피고 H의 선의의 수익자인지) 가) 피고 H의 주장

피고 H은 정당한 채권관계에 의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피고 H이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가격으로 대물변제가 된 것이며, 제2, 3신용보증의 보증조건 변경일인 2013. 11. 29.인 다음날로 피고 H과 G의 매매잔금 지급일이 정한 점을 볼 때, 피고 H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 H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피고 H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H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위 2의 가항 기재 사실 및 아래 사실과 같다.

[원고는 제3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G가 발행하고 피고 A이 배서한 액면 104,970,000원(지급기일 2013. 12. 23.), 액면 39,930,000원(지급기일 2014. 1. 22.), 액면 167,952,000원(지급기일 2014. 3. 21.)의 약속어음에 관한 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 C는 연대하여 516,112,917원[= 대위변제금 합계 515,550,602원(= 제1보증 112,858,662원 + 제2보증 185,031,607원 + 제3보증 222,027,523원 - 제1보증 4,367,190원) + 법적절차비용 560,880원 + 확정지연손해금 1,435원] 및 위 금원 중 대위변제금 515,550,6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2.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9. 1.까지는 약정상의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 주식회사 F은 피고 A, C와 연대하여 222,588,403원(= 제3보증 대위변제금 222,027,523원 + 법적절차비용 560,880원) 및 위 금원 중 대위변제금 222,027,52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9. 1.까지는 약정상의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A과 합동하여 위 516,112,917원 중 어음금 합계 221,850,000원 및 위 금원 중 55,909,118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2013. 12. 23.부터, 33,940,5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2014. 1. 22.부터, 132,000,382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2014. 3.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9. 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과 피고 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H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현

판사황성욱

판사김용현

별지